

# 2021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요일) 15:00 ~ 16:0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박성수, 주상현, 황인호, 최옥채, 김용우, 허연, 김지광,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정용채, 조재영, 안문석, 김민성 위원

○ 상정안건

-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경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21  
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병우)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양병우)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중 「2021회계연도 대학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김명숙)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2회 추경은 교부금, 수입금, 사업비 등 수입 증감에  
(양병우)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세입, 세출 별로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세입의 내부거래 및 기타 부분이 산단회계 전입금으로 588,000천원 증액되었는데  
(최옥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재무과장 : 예년에도 연구대응자금으로 이정도 왔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명숙)

위원 :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평소에 교수님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이라.. 교원복지  
(황인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동호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홍보차원에서 지원 기준, 자격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사무국의 교직원복지지원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동호회 지원입니다. 교수님들을  
(김명숙) 위한 별도의 동호회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그럼 교수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나요?  
(황인호)

재무과장 : 이번에 학생처의 교직원복지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테니스대회 지원으로  
(김명숙) 천만 원 추경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 그럼 교수님들은 테니스에 대해서만 천만 원 잡힌 거고 직원들은 일억 정도 잡혀  
(황인호)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 이 동호회지원비는 교육연구 학생지도비에서 하나의 보전 차원으로 지원되었던  
(김명숙) 부분입니다.

위원 :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은 교육훈련 일정부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의 일환  
(박성수)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 잘못 이해가 되어서 교수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황인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로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해서 교수들이 알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교수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할 항목이 있으면 같은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 교무처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  
(박성수)

위원 :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정부지침에 의해 직원역량강화를  
(김용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로만 봤을 때는 이상할 수  
있지만 사무국에서 이에 대해 펠터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정된다면 서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상호간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항목이 내용과 맞지 않아 그런  
(양병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직원역량강화 사업, 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회를 지원해주기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고 액수가  
많든 적든 교수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위원 :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산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혁)

위원장 : 네 그것은 연구동아리 대상입니다.  
(양병우)

- 위원 : 사실 크게 그룹을 지어 활동을 하면 모를까 동호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규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신임교수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체력단련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테니스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원을 받고 코트도  
 (황인호) 수리해주고, 학교 공식모임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숫자에 제한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 위원 : 이에 대해 학생처에서 쓰는 것도 아닌데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을 왜 학생처에서  
 (김남수)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가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왔나 봅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 이상, 단과대 몇 개 이상 등 규정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수리 부분은 체육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체육학과 입장에서는 그곳이 교실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도 그렇지만 교수회에서도  
 논의하셔서 공평하게 나눠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조직화가 되어야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양규혁) 같습니다.
- 위원 : 본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주면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교수회에 요청을  
 (황인호) 해서 동호회 관련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구체적인 항목 말씀하셨는데 동호회 지원보다는 교수역량강화가 적절하지 않나  
 (양병우) 싶습니다. 그리고 테니스가 오랫동안 독점을 했던 이유는 국공립대학이 테니스대회를  
~~순환하여 주도해 있고 그래서 예산항목에 있어야 하는~~ <sup>국립대학이 테니스대회를</sup> 예산항목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sup>것으로</sup> 일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  
 규정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논의해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수테니스대회는 전국적으로 천오백명이 참여하며  
 (주상현) 우리 대학도 40~5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사실은 거점대 기준으로 우리대학이  
 테니스대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이 대회는 등산모임 등과 다르게  
 학교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탁하다시피 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교수역량강화 이런 부분으로 아예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합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연히  
 끼워 넣고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본예산에 하나의  
 사업으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 원래 본예산 때 해당부서에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그래서 재정위원회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비용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양규혁)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므로 그에 따라 이러한  
 지출이 커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계를 해서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위원장 :  | 교원역량에서 일정부분, 구체적으로 테니스에 대해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고   |
| (양병우)  | 그 기준 또한 교수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합니다.<br>그리고 어떻게 됐든 교수님들은 그래도 복지 측면에서 많이 받고 있지만 직원역량 강화 사업 중 직원해외연수비 부분, 물론 일부 교수님들은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역량도 늘어나고 그려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좀 늘려주시는 건가요? |
| 위원 :   | 예산 사업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해외를 나가는 것이  |
| (박성수)  |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 2022년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편성하겠습니다.  |
| 위원 :   | 일부 보도에서 해외연수가 놀라가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선진화 대학 방문을   |
| (김용우)  | 하고 다녀오면 나름대로의 사업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역량 뿐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와 작년에 국장님과 협의를 거쳤고 차후에라도 학교발전과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
| 위원장 :  |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
| (양병우)  |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 위원 :   | 동의합니다.  |
| (전체)   | 찬성 24표, 반대 0표, 기권 0표  |
| 위원장 :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표시해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여  |
| (양병우)  |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다음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사팀장 :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 (이인혜)  | 설명함.  |
| 위원장 :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양병우)  |   |
| 위원 :   | 대학회계직으로 있던 분들이 그만두신 건가요?  |
| (양규혁)  |   |
| 인사팀장 : | 네 호봉제 대학회계직원이신 생활관 조리원께서 그만두셔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
| (이인혜)  | 제외되는 10명은 아예 자체 계약직이기 때문에 대학회계규정상 빠지는 게 맞아 이번에 감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이유 등을   |
| (양병우)  |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질의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사팀장 : 예전 대학회계직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호봉제로  
(이인혜) 운영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있었습니다. 호봉제 인원이 퇴직을 하면 그만큼 감축하고  
연간금액이 지급되는 연봉제로 인원을 중원해서 정원관리를 하도록 단체협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허연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양병우)

위원 : 말씀하신 감원이나 연봉제 등의 내용들은 이미 단체협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허연)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 이미 상호간 어느 정도 인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병우)

위원 :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든 규정이  
(박성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4조 호봉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즉 자동감축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자동감축된  
정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호봉제가 퇴직하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양병우) 규칙으로 한 근거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찬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사기 찬성합니다. 전원 찬성하여  
(양병우)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의해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 시 주상현, 최옥채, 김지광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위원 : 혼선 방지를 위해 그대로 주상현, 최옥채, 김지광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장 : 그럼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주상현, 최옥채, 김지광 위원님이 결정되었음을  
(양병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021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마치기 전에 곧 있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 위원 :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항목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 전 지도비를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잡혀있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 : 정확하게 기사를 보시면 해당 내용은 권의위가 교육부에 권고한 것입니다. 권고를 (박성수)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교육부의 정책 판단입니다. 그 조항은 입법사항, 국회 법 개정까지 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올해 안에 교육부에서 최소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정한다면 저희는 교육부 방침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어떠한 변동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는 정리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양병우) 바랍니다.
- 간사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작성일 : 2021. 9. 17.(금)

九月十七日



위 원 장 : 양 병 우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부 찬 미